

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정	2000. 1. 17	조례 제 245호
개정	2001. 1. 11	조례 제 321호
	2005. 10. 5	조례 제 706호
일부개정	2015. 7. 28	조례 제1483호
일부개정	2018. 1. 12	조례 제1773호
일부개정	2018. 10. 22	조례 제1872호
일부개정	2023. 11. 6	조례 제246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5. 7. 28>

제1조의2(존속기한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23. 11. 6>

[본조신설 2018. 10. 22]

제2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5. 10. 5, 2015. 7. 28, 2018. 10. 22>

1. 국가 또는 시·도의 보조금
2.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4. 차입금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제3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5. 10. 5, 2015. 7. 28, 2018. 1. 12>

1.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

2. 주민지원사업

3. 법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

4.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·운영 지원

5.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

6.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8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제4조(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 등) 특별회계의 예산편성·결산·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,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(移入)한다. <개정 2018. 1. 12>

[전문개정 2015. 7. 28]

제5조(세출예산의 전용·전출)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「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용인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 조례의 특별회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을 허용한다. <개정 2015. 7. 28, 단서신설 2018. 1. 12, 개정 2018. 10. 22>

[제목개정 2018. 1. 12]

제6조(예비비) 특별회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8>

[제목개정 2015. 7. 28]

제7조 삭제 <2023. 11. 6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. 1. 1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706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7. 28 조례 제148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1. 12 조례 제177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10. 22 조례 제1872호>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11. 6 조례 제246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